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 갱신 시 신고 절차 명확화〉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63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10. 23.
3. 회부연월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경비업무를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를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을 갱신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② (생략)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 ----- -----.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1. ~ 5. (현행과 같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신설>	6. <u>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을 갱신한 때</u>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서 양식에는 도급내역(도급 기간, 도급액, 경비원의 수) 항목과 함께 경비업무의 기간(개시일, 종료일)을 포함하고 있음.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서 양식>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7. 17.>

특수경비업무 [] 개시 [] 종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경비업무 수행시설	시설명		
	주소지		
도급내역 ¹⁾	도급기간	도급액	
	경비원의 수		
경비업무의 기간	개시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1)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이후 같은 시설에 대해 업무 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① 도급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서의 도급기간을 변경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또는 ② 갱신된 도급계약 기간이 기존에 제출한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서의 경비업무의 기간 안에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²⁾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법제처는 특수경비업자가 기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현행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라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했고³⁾, 경찰청 역시 실무상 특수경비업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개정안은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을 갱신한 때를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체계 측면에서 개정안 제4조제3항제6호의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을 갱신한 때’와 현행법 제4조제3항제5호의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⁴⁾을 고려하여 제4조제3항제5

2)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음.

3) 법제처 2024. 10. 2. 법령회신(안건번호 24-0548)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43657&pageCnt=10¤tPage=15&keyField=&keyWord=&sort=date

4) 법제처의 2024. 10. 2. 법령회신(안건번호 24-0548)의 이유에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경비업자는 도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호를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특수경비업무를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특수경비업무 개시·종료 신고서 양식 중 도급기간과 경비업무의 기간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도급기간 항목과 경비업무의 기간 항목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현재에도 실무상 특수경비업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신고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신설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및 종료도 도급계약으로 정한 도급기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수경비업무를 개시·종료 시기는 도급기간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